

- 설 맞이 중소기업 자금조달 금융 애로 완화를 위한 -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2024년도 인천시와 NH농협,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이 함께하는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2차」 지원을 다음과 같이 확대하여 공고합니다.

2024. 1. 29.

■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요

1. 지원 규모: 1,700억원

2. 지원 대상: 인천소재 제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 중소기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업종(관내 공장을 운영중인 제조기업 또는 제조업관련업)을 영위하면서 NH농협은행 대출이 가능한 기업

- 1) 제조업: 공장등록 및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2) 제조업관련업: 업종과 관련된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별첨 참고)
- 3) NH농협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한 기업(사전상담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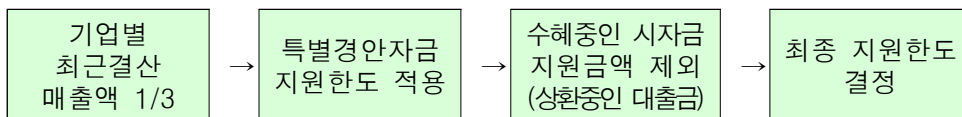
* 대출 가능여부는 사전에 업체가 NH농협은행에 직접 확인 요함

3. 지원 내용: 은행 대출 운전자금의 이차차액보전

○ 지원 한도: 일반기업 10억원(우대10~100억원, 업체별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다름)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

※ 기존 인천시 경영안정자금 수혜 중인 업체일 경우, 상환중인 대출금은 지원한도에서 제외(원금차감)



○ 지원 기간: 1년(만기 일시 상환), 3년(6개월 거치 5회 분할 상환)

○ 지원내용:

- 市 : 최종 산출금리에서 **0.7% 이차보전 균등 지원**
- NH농협은행 : 채권보전별 대출금리 우대(6개월 변동금리)
- 신용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 기술보증기금 : 보증비율100%, 3년이내, 보증료 0.2%p 지원(사전상담必)

4. 기타 조건

- 취급 은행: NH농협은행 (타 은행 불가)
- 대출 금리: NH농협은행이 정한 협약금리
- 대출 유효기간: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5. 지원 제외 대상

- 유가 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6. 지원 결정 취소 대상

- 지원 결정 후 폐업, 관외 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 지원 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 요건 미충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7. 신청 및 접수

- 신청 기간: 2024. 1. 29. ~ 재원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비즈오케이 <http://bizok.incheon.go.kr>)
- 신청 문의: 인천테크노파크 기업성장센터 ☎(032)260-0661~3

8. 구비서류

구분	서류 및 요건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홈택스 표준재무제표증명 또는 세무사발행 재무제표확인원)	
업종증빙서류	제조업	제조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제조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 및 임대차계약서
	제조관련업	등록증 및 인·허가증
지방세 증명서	완납증명서	

※ 심사기준 완화

-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황 중이라도 관계없이 지원
- 동일기업 중복지원 제한(해당연도 중앙부처 및 지자체 동일분야 자금 기 수혜기업) 미적용

#인천형 특별 경영안정자금 지원개요

1. 지원대상별 세부현황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市지원율	비고
일반기업	제조업 및 제조관련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공장등록(또는 용도증빙(제조소, 공장), 제조업전업률 30% 이상 · 공장건축면적 500㎡ 이상 : 공장등록증 필수 · 공장건축면적 500㎡ 미만 :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대장(제조 용도 확인) ■ 제조업관련업(별첨) :업종 관련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 	10억원	0.7% 균등지원	
여성·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여성기업인확인서	10억원		
	여성친화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여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10억원		
	국가보훈대상자 기부업체	행복나눔 참여인증서 (한도) 기부업체 I 5억원이내, 기부업체II 10억원 이내	10억원		우대1회
인천시 선정 우수기업	유망중소기업	인천시지정 유망중소기업 선정서	15억원		
	아름다운공장	인천시지정 아름다운공장 선정서	15억원		우대1회
	비전기업	인천시지정 비전기업 선정서	30억원		
	중견성장사다리	인천시지정 중견성장사다리기업 선정서	50억원		
	중소기업인대상	인천시지정 중소기업인대상 선정서	50억원		
	품질우수제품 지정기업	인천시지정 품질우수제품 지정서	10억원		우대1회
	소상공인경영대상기업	인천시지정 소상공인경영대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가족친화기업	정부 및 인천시 가족친화기업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혁신형 기업	뿌리기업 선정기업	인천시지정 일하기좋은 뿌리기업 선정서	10억원		
	벤처기업	벤처기업확인서	10억원		우대1회
	스마트공장도입기업	협약서(중소벤처기업부)	15억원		우대1회
	지식기반서비스업	업종별 등록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15억원		
수출형 기업	혁신형중소기업 (MAIN-BIZ)	메인비즈 인증서	10억원		우대1회
	FTA인증 수출기업	업체별(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관세청)	10억원		우대1회
	FTA활용 성공사례수상기업	FTA 활용 성공사례 수상 선정서	10억원		우대1회
수출형 기업	수출기업 (수출실적과 수출계약 중 택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관세무역개발원) ■ 간접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정보통신) (한도) 수출실적의 1/2과 매출액의 1/3, 30억원 중 가장 작은금액 ■ 수출계약서(T/T, L/C, 구매확인서 등) (한도) 수출계약금액중 수령예정금의 90%와 매출액의 1/3, 30억원중 가장 작은금액 	30억원	대출기간: 6개월, 1년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市지원율	비고
고성장 기업	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최근 3개년 결산 재무제표 (최근 3개년: 2021, 2022, 2023년) 	30억원		
	II. 3개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성장 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20%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 (고성장 I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개년도 매출액 평균 증가율 5% 이상 - 최근결산 매출액 100억원 또는 최근월 고용인원 100명 이상 - 개업일자 2021. 01. 02 이전 - 최근 결산년도 매출액이 전년대비 동등 또는 증가 	30억원		
고용창출 기업	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1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최근 3개년도 마지막 월(12월 귀속) 신고서 또는 평균인원 계산시 3개년(매월) 신고서 · 고용창출 I과 II는 개업일자가 2021. 01. 02 이전 이면서 최근 결산년도 고용인원이 전년 대비 동등 또는 증가 해야 하며, 처음 및 마지막 연도 고용인원이 최소 5명 이상 이어야 함 · (고용인원 산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안: 최근결산 3개년 각각 마지막 월(귀속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간이세액 인원 - 2안: 평균인원 계산 · 월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12월 총 1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 반기별 신고업체 : 귀속연월 1월분(상반기), 7월분(하반기) 총 2부 간이세액 인원의 평균 	10~55억원 (고용인원수 대비 최대한도 : 최근월 고용인원 50명 이상시 40억원, 100명 이상시 50억원 단, 일자리창출우 수기업은 최대한도 55억원)	0.7% 균등지원	우대1회
	II. 3개년 고용인원 평균 증가율 5% 이상				
	III.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정부 또는 인천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서			
	IV. 직전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일 기준 직전 1년간, 고용인원 10명 증가(1년간은 12개월 충족 필수, 11개월, 13개월 등은 불가) ■ 고용보험가입자 명부 · (고용인원 증가분 = B - 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 : 신청일 기준 최근월 대비 1년전 고용인원 수 - B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고용인원 수 			
	V.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천시선정 어르신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선정서			
산업확충 기업	해외유턴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완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했던 기업이 청산 후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부분복귀: 해외사업장을 2년이상 운영중이면서 인천내 공장을 설립(사업자등록)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해외사업장요건 등은 해외유턴기업 법률 적용(제조업만 해당되며, 해외사업장 생산품목과 인천공장 생산품목이 일치 등) 	50~100억원		우대1회
	우리시 전입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시로 공장(본점)을 이전한 날로부터 1년 이내 기업 ※ 본점 및 공장 이전 필수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 사실증명: 개인사업자의 이전일자(입주일자) 확인 	50억원		

구분	지원항목	신청대상(요건)	지원한도	市지원율	비고
산업확충 기업	신규산단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산단(강화일반, 서운산단, IHP도시첨단, I-FOOD PARK) 입주 예정기업 또는 입주(1년이내) 기업 ■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1년이내) 기업 	20억원	0.7% 균등지원	우대1회
	산단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계약(확인)서 - 입주 또는 입주예정 사실 확인 ※ 산업단지입주기업 중 입주 후 1년이내 증빙의 경우 입주일자 증빙을 위해 법인등기등본 또는 사실증명 추가증빙 	10억원		
	8대전략산업	<p>전략산업확인서(소정양식)</p> <p>※ 필요시 전략산업관련 매출증빙</p>	10억원		
	재해기업	<p>재해기업(피해일로부터 3개월 이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피해 증빙서류 - 재해확인서(구조고도화자금 양식참조) 부대시설 증빙서류, 재해확인증(화재일 경우 화재증명원) 	15억원		
사회적 친화기업	인천새일 여성인턴 채용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시 새일센터 인턴쉽 통한 여성인턴 채용기업 ■ 인천시 새일센터 여성인턴지원약정서 체결후 1년 이상 고용유지 기업 ■ 상용직 및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 	1억원		
	창조경제혁신기업	<p>창업 7년이내 기업으로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 추천기업(추천서)</p>	5억원		우대1회
	관광업	<p>관광진흥법에 의거 등록, 지정 및 허가 받은 기업</p>	3억원		

※ (일반기업) 매출액 무관 최대 2억원 이내

※ (스마트공장도입기업) 스마트공장보급사업 최초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 (고용창출기업) 월 평균값으로 고용인원 계산 시 평균값은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올림이며, 평균값으로 충족여부 확인 시, 3개년 모두 평균 고용인원을 산출하여 확인

※ (해외유턴기업) 증빙서류(해외사업장 운영 증빙서류, 해외사업장 청산 증빙서류, 국내사업장 증빙서류 등)는 별도 문의

2. 지원절차

①	신 청	기업→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상담 : 기존 지원이력, 업종 등 지원 대상 여부 등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http://bizok.incheon.go.kr)
②	서류심사	I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기업 지원이력 및 업종 등 요건확인 ■ 서류 보완이 완료된 통보 예정기업에 대한 심사서 작성
③	지원결정 통보	ITP→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주 월요일 지원결정 통보 (비즈오케이에서 해당기업이 지원결정통보서 직접 출력)
④	대출신청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원결정통보서 출력 후 은행에 대출 신청 ※ 대출 취급 시 기업의 최종 산출금리에서 인천시 0.7%p 차감된 금리 적용

3. 심사방법

- 업종, 지원이력, 지원항목별 심사기준 확인을 통해 지원 가능여부 판단
- 지원한도 산정
 - 최근결산 매출액의 1/3과 각 지원한도중 작은금액이 최대한도이며, 기존 상환 중인 대출원금을 제외하여 지원한도 산정
 - 창업1년 미만(또는 결산기간 미도래) 기업은 재무제표 제출 없이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을 제출하면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과세기간 1년 미만일 경우 결산 매출액을 연간으로 환산 가능
 - 법인전환일 경우 개인사업자 매출액을 합산 가능
- ※ 기타 세부적인 심사기준 및 방법은 항목별 지원기준에 따름

4. 지원제외 대상

- 시(市) 경영안정자금(동일자금 및 다른 종류의 운전자금 포함)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기업
 - ※ 시 경영안정자금 지원결정 잔액(또는 매출액 대비 지원한도)이 남아 있는 업체는 남은 한도 내에서 지원 가능
-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제조업 전업을 30% 미만인 기업(제조업에 한함)
- 공정위에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계회사로 지정된 중소기업(필요 시 중소기업 확인서 제출)
- 세금을 채납중인 기업
-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5. 지원결정 취소 등

-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기업 등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용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 기타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지식서비스업 범위>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도로화물 운송업	493
해상 운송업	501
항공 운송업	51
화물 취급업	5294
보관 및 창고업	5210
물류 터미널 운영업	52913
화물 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52992
화물 포장, 검수 및 계량 서비스업	52993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오라키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	76390
산업설비, 운송장비 및 공공장소 청소업	74212
폐기물 수집·운반업	38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포함)	(39009)
폐기물 처리업	382
폐수 처리업	37012

제조업관련 지식기반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62021
유선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1
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2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19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1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22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6201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120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다만 제조업 지원목적만 해당)	6399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0111
농림수산학 및 수의학 연구개발업	70112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70113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70121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7012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119
경제 및 경영학 연구개발업	70201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70209
시장 조사업(여론 조사업 제외)	71400
경영 컨설팅업	7153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39001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009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2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2129
제품 디자인업	73202
시각 디자인업	73203
패션, 섬유류 및 기타 전문 디자인업	73209
물질 성분 검사 및 분석업	72911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72919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1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2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59113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4

지식서비스업

산업명	표준산업분류번호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75991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75992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 영위여부 확인

- 1) 제조관련서비스업·지식기반서비스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업종 설명에 따라 관련 등록증 및 허가증 등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확인필수
 - 통계청>통계분류포털>한국표준산업분류>분류코드 검색
 - ※ 세부업종에 따라 복수이상의 등록증 또는 인허가증이 구비되어야 하는 산업도 있음
 - ex.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시설경비허가증, 위생관리용역업신고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등 중 2개이상 구비필수)
- 2) 등록증 및 허가증이 구비되지 않는 제조관련서비스업의 업종일 경우 관련매출의 확인을 통해 업종영위 여부 판단
 - 해당 업종영위 관련 계약서류 확인
 - 관련 매출액 확인 (세금계산서 확인)
 -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합계(관련매출)가 전체매출의 20% 이상 충족하여야 함
 - ex. 포장 및 충전업 등